

현장에서 웃는 협동조합, 지역과 조합의 상생성장 -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6~'28) 수립 -

- 협동조합이 지역공동체 복원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S.M.I.L.E” 5대 전략 본격 추진
- 지역문제 해결, 사회안전망 강화에 협동조합의 구심점 역할 기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4월 6일(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6~'28)’을 보고하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S.M.I.L.E” 5대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번 계획은 협동조합의 건실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기초로 수립된 정책비전으로서, 기획예산처는 현장 활동가 및 전문가 간담회, 시·도 협의회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수립하였다고 강조하였다.

* S.M.I.L.E 5대 전략 : (Scale up) 협동조합 경쟁력 강화, (Mutual) 상호간 협력·연대 강화 (Identity) 정체성 강화, (Local) 지역사회 참여 확대, (Efficiency) 운영 효율성 제고

양극화 심화, 지방소멸 위기 속에 협동조합은 상호 연대·협력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 등에 기여하는 경제주체로서 시장과 공공이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을 보완하며 중요도가 확대되고 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5년말 기준 협동조합은 3만개 이상 설립되는 등 분야·업종·지역이 다양하게 성장중이며, 종사자 규모 및 취약계층 고용도 확대 추세를 보이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운영률 제고, 연합회 중심 협력 강화 등 질적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 등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보완할 과제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금번 계획은 ‘현장에서 웃는 협동조합, 지역과 조합의 상생성장’을 비전으로 “S.M.I.L.E” 5대 전략을 통해 그간 부족한 문제를 보완함과 동시에 협동조합의 내실있는 성장을 위한 재정·금융·세제지원, 지역 서비스 공급 역할 등을 강화하였다.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6~'28) 주요내용]

① ㉟Scale up : 경쟁력 강화

- 기존 교육·판로 등 기능별로 지원하던 방식을 전환하여 진입-도약-고도화 등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종합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
 - * (진입) 협동조합 기초교육, 법인설립 실무지원 등 연합회를 통한 창업 컨설팅 지원 (도약) 설립 5년 내 조합의 기초 경영지원(법률회계 등), 핵심역량 발굴 및 사업화 안착 지원 (고도화) 5대 분야(의료,돌봄,교육,주거,에너지·환경) 중심 투·융자, R&D 등 컨설팅 지원
- 자금조달을 위해 우선출자 총액한도를 확대(자기자본 30% → 50%)하고, 신탁이 협동조합 등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 우선출자 :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출자로 선거권·의결권 미부여하고, 現 납입출자금 총액(또는 우선출자금 제외 자기총자본)의 30% 초과할 수 없음
-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관련 매출액 기준이 탄력 적용되도록 종합적 지원방향을 검토한다

② ㉟Mutual : 상호간 협력·연대 강화

- 연합회의 기능강화를 위해 연합회 관계자가 사회적협동조합 총회 입회시 공증부담을 완화하고, 연합회에 조합 육성 및 교육 기능을 부여한다.
- 업종별·지역별로 협동조합 거점실행조직을 선정하고, 지역 단위의 공공서비스 수행을 위해 중앙-지방 등과 사업 공동기획·수행을 추진한다.
- 상호금융기관, 정책금융기관 등의 자금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 * (예)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조직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

③ ㉟Identity : 정체성 강화

- 조합원·감사에 '총회소집요구권' 및 '총회의안제안권'을 부여*하고, 조합원에 사전 미통지된 안건 의결 제한** 등 조합원의 참여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 * 현재 이사장(이사회)에만 '총회 소집권', '의안제안권' 부여중
 - ** 현재 총회 7일전까지 안건 사전 통지의무 부여중이나, 미통지시 의결 제한규정 미비
- 경영공시 대상 협동조합*에 대한 안내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실·지연 공시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등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 * 조합원 200인 이상 또는 출자금 납입총액 30억원 이상 + 사회적협동조합 전체

④ Local : 지역사회 참여 확대

- (주거) 특화임대주택(매입·건설형) 운영·관리 주체를 사회적협동조합 등까지 확대하여 고령자·청년·장애인 등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 * 특화형 건설임대주택 운영 주체에 사회적협동조합 등 민간사업자 추가
- (에너지) 지역·마을 협동조합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을 年 500개 이상 조성(5년간 2,500개)할 계획이다.
 - * 시설자금 융자, 공공 유희부지 활용, 기금 활용 등 행·재정지원 추진
- (빈집정비/농어촌 민박) 빈집정비사업, 농촌 빈집활용 민박사업 시행자에 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되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의료) 국립중앙의료원 인력 매칭플랫폼을 활용하여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인력확보를 지원하고, 의료 외 분야로 부(副) 사업 확장을 허용한다.
- (농어촌) 협동조합을 활용하여 농촌에 주거·돌봄 등 서비스 공동체 육성·지원을 추진하고, 어촌·도서 지역 해안 환경관리, 정주여건 개선 등 서비스를 공급한다.
 - * (농촌)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참여 확대, 지역 먹거리 프로그램 지원 등 (어촌) 취약해안 해양폐기물 대응 시 협동조합 등과 우선계약 추진 등

⑤ Efficiency : 운영 효율성 제고

- 협동조합의 운영·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유 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강화*하고, 관리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
 - * 기획처(협동조합 종합정보포털), 시도(일반협동조합 관리, 새올관리시스템), 국세청(사업자번호, 휴폐업사실증명 등), 법원행정처(법인등록번호) 등
- 총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면 중심에서 원격영상회의 방식까지 허용하는 등 설립·운영상 편의를 제공한다.

정부는 제도개선 사항 등 즉시 추진 가능한 정책과제는 신속히 진행하고, 법 개정 사항의 경우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시·도 협의회 등을 통해 정책과제가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과제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6~'28)'을 최종 심의·의결할 계획이며, 금번 계획을 통해 협동조합이 지역 공동체 복원의 핵심주체로서 성장될 것으로 기대한다.

* 기획예산처 차관(위원장), 행안부·농식품부·복지부 등 정부위원 10명, 민간위원 9명

[별 첨]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6~'28)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상생협력전략과	책임자	과 장	이정운 (044-214-1750)
		담당자	사무관	배준혜 (jhbae10@korea.kr)
			사무관	양성철 (yg1102@korea.kr)
담당 부서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주연 (044-203-6363)
		담당자	사무관	이수진 (sjinlee@korea.kr)
		담당자	사무관	이재모 (zamo@korea.kr)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제도과	책임자	과 장	권영우 (044-205-3572)
		담당자	사무관	이종찬 (jongpod@korea.kr)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진흥과	책임자	과 장	장석인 (044-203-2831)
		담당자	사무관	이성희 (shanh7109@korea.kr)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책임자	과 장	송재원 (044-201-1571)
		담당자	사무관	이아름 (smile1984@korea.kr)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오성일 (044-202-2270)
		담당자	사무관	박재홍 (duopark@korea.kr)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동현 (044-201-3634)
		담당자	사무관	이은경 (yssamzie@korea.kr)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서은정 (051-773-6267)
		담당자	사무관	이종선 (jstwo@korea.kr)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책임자	과 장	신재경 (044-204-7440)
		담당자	주무관	윤혜림 (caramel051@korea.kr)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상호금융팀	책임자	팀 장	안남기 (02-2100-1660)
		담당자	사무관	임재원 (jwlim0726@korea.kr)



1 설립 현황

□ (설립수) '24년 기준 협동조합수(누계)는 26,539개이며, '22년(23,892개)에 비해 11.1% 증가

* 협동조합 설립수(개): ('18) 14,526, ('20) 19,429 ('22) 23,892 ('24) 26,539

○ (유형) 일반협동조합은 20,822개(78.5%), 사회적협동조합은 5,577개(21.0%), 연합회는 140개(0.5%)

구분	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소계	사업자	다중이해관계자	직원	소비자				
조합수(개)	26,539	20,822	15,371	4,121	713	617	5,577	100	27	13
비중(%)	100.0	78.5 (100.0)	57.9 (73.8)	15.5 (19.8)	2.7 (3.4)	2.3 (3.0)	21.0	0.4	0.1	0.0

□ (지역별 현황) 전체 협동조합은 경기, 서울, 전북, 전남, 강원, 경남, 경북의 순으로 분포하며, 수도권(서울, 경기)의 비율은 36.1%

구분	전국	서울	경기	전북	전남	강원	경남	경북	기타
전체	26,539	4,501	5,062	1,878	1,749	1,533	1,462	1,439	8,915
	(100.0)	17.0%	19.1%	7.1%	6.6%	5.8%	5.5%	5.4%	33.6%
일반협동조합	20,822	3,474	3,782	1,534	1,457	1,254	1,072	1,123	7,126
	(100.0)	16.7%	18.2%	7.4%	7.0%	6.0%	5.1%	5.4%	34.2%

*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일반 협동조합 설립신고 수리(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제1항)

□ (부처별 현황) 사회적협동조합은 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문체부, 국토부 등 5개 부처 소관 조합이 78.4%를 차지

구분	전체	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문체부	국토부	농식품부	행안부	기타
개수	5,577	2,263	823	416	439	434	241	183	778
비중(%)	(100.0)	(40.6)	(14.8)	(7.4)	(7.8)	(7.7)	(4.3)	(3.3)	(14.0)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인가(협동조합기본법 제116조제2항)

2 운영 현황

□ (운영 여부) '24년 사업을 운영 중인 협동조합*은 14,285개로 '22년(10,976개) 대비 30.1% 증가

* '24년 귀속 법인세 부가가치세 납부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 전체 운영조합 중 일반협동조합은 69.5%, 사회적협동조합은 30.1%, 일반협동조합 중 사업자협동조합이 71.5%로 다수

구분	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소계	사업자	다중이해관계자	직원	소비자				
운영조합수(비중)	14,285(100)	9,923(69.5)	7,099(49.7)	2,131(14.9)	390(2.7)	303(2.1)	4,302(30.1)	38(0.3)	9(0.1)	13(0.1)
운영률(%)	53.8	47.7	46.2	51.7	54.7	49.1	77.1	-	-	-

* 운영률(%) = 설립(신고·인가)된 협동조합 대비 운영 중인 협동조합의 비율

□ (조합원) 총 71.4만명으로 '22년(62.2만명) 대비 9.2만명(14.7%) 증가

○ 평균 조합원 수는 50.0명으로, '22년(57.0명) 대비 7.0명 감소

(단위: 명)

구분	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소계	사업자	다중이해관계자	직원	소비자				
조합원 수	713,913	513,300	273,690	190,574	8,744	40,292	199,659	421	245	288
평균	50.0	51.7	38.6	89.4	22.4	133.0	46.4	11.1	27.2	22.2

□ (설립목적) 조합원 소득증대(29%), 지역사회 공헌(28%), 일자리 창출(25%)을 목적으로 협동조합 설립

설립목적	조합원 소득증대	지역사회 공헌	일자리 창출	정부사업 참여	조합원 복지증진	경쟁력 제고	합리적 경제소비	기부 자원봉사	정부지원	조합원 친목
비중(%)	28.9	28.4	24.9	5.0	3.1	2.5	2.1	2.1	2.1	0.9

□ (총회) 연평균 2.3번 총회 개최했으며, 주된 안건은 임원변경(46%), 자금조달(27%), 주사업 변경 이외 정관 변경(25%), 주사업 변경(17%) 등

□ (교육) 협동조합의 55%는 조합원 대상 협동조합 기본교육 실시, 협동조합의 61%는 임원 대상 협동조합 운영교육 실시

3 운영중인 협동조합의 재무 현황

- (매출액) 협동조합의 평균 매출액은 3억 1,973만원으로, '22년(3억 7,470만원) 대비 5,497만원 감소(△14.7%)
 - 평균 당기순이익은 △1,180만원으로 '22년 흑자(118만원)에서 적자 전환
- (재무상태) 자산('22년 3.5 → '24년 3.4억원), 부채('22년 2.4 → '24년 2.7억원), 자본('22년 1.1 → '24년 0.7억원)
 - (출자금) 조합당 7,733만원으로 '22년(5,382만원) 대비 2,351만원 증가

4 운영중인 협동조합의 고용 현황

(단위: 명)

구분	전체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전체 종사자 수	216,179	134,090	81,314	775
임원	87,717	59,232	28,075	410
이사장	14,285	9923	4302	60
상근이사	14,438	10,174	4,225	39
비상근이사·감사	58,994	39,135	19,548	311
임금근로자	88,074	49,175	38,598	301
자원봉사자	40,388	25,683	14,641	64
※ 취업자 수	137,410	82,777	54,144	489

* 종사자 = 임금근로자 + 유·무급 상근 임원 + 유·무급 비상근 임원 + 유·무급 자원봉사자
 취업자 = 임금근로자 + 유·무급 상근 임원 + 유급 비상근 임원 + 유급 자원봉사자
 임금근로자 = 임금을 목적으로 주당 1시간 이상 협동조합 일을 하는 자

- (종사자 수) 총 21.6만명으로, '22년(19만명) 대비 2.6만명(13.9%) 증가
 - 평균 종사자 수는 15.1명으로, '22년(17.4명) 대비 2.3명 감소
- (임금근로자 수) 총 8.8만명이며, '22년(7.4만명) 대비 1.4만명(19.0%) 증가
 - 평균 임금근로자 수는 6.2명으로, '22년(6.8명) 대비 0.6명 감소
- (취업자 수) 총 13.7만명으로, '22년(10.2만명) 대비 3.5만명(34.5%) 증가
 - 평균 취업자 수는 9.6명으로, '22년(9.4명) 대비 0.2명 증가